

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東京、早稲田、Chinese）定款

요한동경기독교회(동경, 와세다, 차이니즈)정관

2015年3月29日

2015년 3월 29일

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東京、早稲田、Chinese）

요한동경기독교회(동경, 와세다, 차이니즈)

常任委員会

상임위원회

法制小委員会

법제소위원회

第1章 総則 (총칙)	5
第1条 名称 (명칭)	5
第2条 事務所の所在地 (위치)	5
第3条 包括宗教団体 (포괄단체)	5
第4条 目的 (목적)	5
第5条 範囲 (범위)	5
第6条 公告の方法 (공고 방법)	6
第2章 教会政治の原理 (교회정치의 원리)	6
第7条 信仰告白 (신앙 고백)	6
第8条 教会の主権 (교회의 주권)	7
第9条 福音的分業 (복음적 분업)	7
第3章 教会員 (교인)	7
第10条 教会員の区分 (교인의 구분)	7
第11条 教会員の権利 (교인의 권리)	8
第12条 教会員の義務 (교인의 의무)	8
第13条 教会員の資格喪失 (교인의 자격상실)	8
第4章 教会役員 (교회의 직분자)	9
第14条 区分 (구분)	9
第15条 恒常職 (항존직)	9
第16条 臨時職 (임시직)	9
第5章 牧師 (목사)	9
第1節 牧師 (목사)	9
第17条 定義 (정의)	9
第18条 牧師の称号 (목사의 칭호)	10
第2節 担任牧師 (담임목사)	10
第19条 担任牧師の職務 (담임목사의 직무)	10
第20条 担任牧師の招聘 (담임목사의 청빙)	10
第21条 担任牧師の任期 (담임목사의 임기)	11
第22条 担任牧師の辞任 (담임목사의 사임)	11
第23条 担任牧師の解任 (담임목사의 해임)	12
第24条 担任牧師の休職 (담임목사의 안식)	12
第3節 副牧師 (부목사)	12
第25条 副牧師の招聘、再任、解任 (부목사의 청빙, 재임, 해임)	12
第6章 長老、按手執事、勸師 (장로, 안수집사, 권사)	13
第26条 長老の職務 (장로의 직무)	13
第27条 長老の資格 (장로의 자격)	13

第 28 条 長老の執務期間 (장로의 시무 연한)	13
第 29 条 按手執事の職務 (안수집사의 직무)	14
第 30 条 按手執事の資格 (안수집사의 자격)	14
第 31 条 按手執事の執務期間 (안수집사의 시무 연한)	14
第 32 条 勸師の職務 (권사의 직무)	14
第 33 条 勸師の資格 (권사의 자격)	14
第 34 条 勸師の執務機関 (권사의 시무 연한)	15
第 35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選任と任職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선거 및 임직)	15
第 36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辞任・解任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사임)	15
第 37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辞任届处理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사임서 처리)	16
第 38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休職及び復職 (장로、안수집사、권사의 휴무 및 복직)	16
第 7 章 伝道師、宣教幹事、署理執事、事務職員	
(전도사、선교간사、서리집사、사무직원)	16
第 39 条 伝道師、宣教幹事の任命 (전도사、선교간사의 임명)	16
第 40 条 署理執事の職務、任命および辞任 (서리집사의 직무 및 임명)	16
第 41 条 職員 (직원)	17
第 8 章 議決機関 (의결기구)	17
第 42 条 議決機関の区分 (의결기구의 구분)	17
第 9 章 共同議會 (공동의회)	18
第 43 条 性格 (성격)	18
第 44 条 構成 (구성)	18
第 45 条 招集 (소집)	18
第 46 条 會議 (회의)	19
第 47 条 職務 (직무)	19
第 48 条 定足数 (정족수)	20
第 49 条 定足数の特則 (정족수의 특별 규칙)	20
第 50 条 教会員名簿 (교인명부 작성)	21
第 10 章 堂會 (당회)	21
第 51 条 定義 (정의)	21
第 52 条 構成 (구성)	22
第 53 条 職務 (직무)	22
第 54 条 招集 (소집)	22
第 11 章 執行組織 (집행기구)	23

第 55 条 執行組織の区分 (집행기구의 구분)	23
第 12 章 諸職会 (제직회)	23
第 56 条 機能 (제직회의 기능)	23
第 57 条 構成 (제직회의 구성)	23
第 58 条 招集 (제직회의 소집)	24
第 59 条 職務 (제직회의 직무)	24
第 60 条 部署 (부서)	24
第 13 章 人事委員会 (인사위원회)	26
第 61 条 人事委員会 (인사위원회)	26
第 14 章 その他の必要組織 (기타 필요 기관)	27
第 62 条 その他の組織の設立 (기타 기관의 설립)	27
第 63 条 自治組織 (자치기관)	27
第 15 章 監事 (감사)	27
第 64 条 機能 (기능)	27
第 65 条 選出、任期、構成 (선출, 임기 및 구성)	27
第 66 条 監査活動 (감사 활동)	28
第 16 章 會議及び投票 (회의 및 투표)	28
第 67 条 會議の成立 (회의의 성립)	28
第 68 条 議決定足数 (의결정족수)	28
第 69 条 投票方法 (투표 방법)	28
第 17 章 財産及び財政 (재산 및 재정)	29
第 70 条 財産權 (재산권)	29
第 71 条 (재산의 관리)	29
第 72 条 財政原則 (재정원칙)	29
第 73 条 財政帳簿の閲覽 (재정장부 열람)	30
第 74 条 予算及び決算 (예산 및 결산)	30
第 75 条 予備費 (예비비)	30
第 76 条 献金の管理 (헌금 관리)	31
第 77 条 財政支出 (재정 지출)	31
第 78 条 支出証拠 (지출 증빙)	31
第 79 条 會計年度 (회계연도)	32
第 18 章 勸告と懲戒 (권고와 징계)	32
第 80 条 勸懲 (권징)	32
付則 (부칙)	32

第1章 総則 (총칙)

第1条 名称 (명칭)

1. 本教大会は、「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という。
2. 本教会と宗教法人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とは、それぞれ独立した宗教団体である。
3. 本教会は、宗教法人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から独立して財産権及び人事権を行使する。

1. 본 교회는 요한동경기독교회라 칭한다.
2. 본 교회와 「종교법인 요한동경기독교회」는 각각 독립적인 종교단체이다.
3. 본 교회는 「종교법인 요한동경기독교회」로부터 독립된 재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第2条 事務所の所在地 (위치)

本教会の事務所は、東京都新宿区北新宿4丁目30番2号に置く。

본 교회는 東京都新宿区北新宿4丁目30番2号에 둔다.

第3条 包括宗教団体 (포괄단체)

本教会の包括宗教団体は、「海外韓人長老会日本老会」(以下「老会」という。)とする。また、本教会は、本教会の独立性が侵害されない範囲でのみ海外韓人長老会憲法(2009年2月3日制定)に服する。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일본노회」(이하, 「노회」라고 칭한다)에 속한다. 또한 본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외한인장로회헌법(2009년 2월 3일 제정)에 구속된다.

第4条 目的 (목적)

本教会は、礼拝、宣教、救済、教育および聖徒の交わりを通して、分かち合いと仕えの共同体を形成し、日本に神様の御国を成し遂げることを目的とする。

본 교회는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第5条 範囲 (범위)

1. 本教会は、第4条の目的に合致する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本教会は、教会の聖潔と平和と秩序とを維持し、活動を行うにあたっては、信仰的かつ合理的な方法で行い、教会の発展と牧会の有益を図らねばならない。本教会が実施する活動の種類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伝道と宣教に関連する活動

- (2) キリスト教教育および奨学金に関連する活動
- (3) 救済に関連する活動
- (4) 慈善、奉仕、救済などの社会福祉活動
- (5) 教会設立、拡張、移転活動
- (6) 広報、各種マスメディア活動
- (7) 財産の所有、保存、維持管理
- (8) 上記各号に関連するサポート活動一切
- (9) その他定款上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教会が必要と認める活動

2. 本教会は、上記の活動を実施するため必要に応じて、堂会の議決をもって別の法人や組織を置くことができる。別の法人を設立する場合で本教会が財産を拠出するときは、共同議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본 교회는、제 4 조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 교회는、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활동
-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활동
- (3) 구제와 관련된 활동
- (4) 자선、봉사、구제 등 사회복지 활동
- (5) 교회 설립、확장、이전 활동
- (6) 홍보、각종 매스 미디어 활동
- (7) 재산의 소유、보존、유지、관리
- (8) 위 각 호에 관련된 지원 활동
- (9) 기타 정관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본 교회는 위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의결로써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법인의 출연 재산은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第 6 条 公告の方法 (공고 방법)

本教会の公告は、事務所の掲示板及び教会ホームページにその内容を 14 日間掲示して行う。本教会의 공고는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 일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第 2 章 教会政治の原理 (교회정치의 원리)

第 7 条 信仰告白 (신앙 고백)

本教会は、聖書を神様の御言葉として信じ、これを信仰告白の根拠とする。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第8条 教会の主権 (교회的主權)

本教会の頭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教会の主権は、主の召しを受けた教会員にある。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第9条 福音的分業 (복음적 분업)

すべての教会員は、キリストの働き人であり、各自が主の召しを受けて神様の御国に参加
する者である。したがって、教会員の地位は平等であり、教会員はお互いにその働きを尊
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각자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의 지위는
평등하며, 교인은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第3章 教会員 (교인)

第10条 教会員の区分 (교인의 구분)

1. 本教会の教会員は、加入教会員、幼児洗礼教会員、洗礼教会員（入教教会員）に区分す
る。

- (1) 加入教会員：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を決心し、共同礼拝に出席している者
- (2) 幼児洗礼教会員：洗礼教会員の子供で、5歳未満の者であって、幼児洗礼を受けた者
- (3) 洗礼教会員：満14歳以上の者であって、本教会で洗礼を受けた者（洗礼教会員のう
ち、幼児洗礼教会員であった者で本教会で入教誓約した者を入教教会員という。）

2. 他の教会で洗礼を受けた者で、他の教会から転籍した教会員は、本教会の礼拝に出席し、
かつ新来者クラスの教育を履修して本教会に登録した場合に限り、洗礼教会員とみなされ
る。ただし、新来者クラスの教育の履修は、新来者クラスを担当する使役者または担任牧
師との面談によって、これを履修したこと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1. 본 교회의 교인은 가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교인) 으로 구분한다.

- (1) 가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출석하는 자
- (2)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로서 5세 미만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
- (3) 세례교인: 만 14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유아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에서 입교 서약한 자를 입교교인으로 칭한다).

2. 타 교회에서 옮겨 온 세례교인의 경우, 본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며 새신자반
교육을 이수하고, 본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간주한다.
새신자반 교육은 새신자반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 혹은 담임목사와의 면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

第 11 条 教会員の権利 (교인의 권리)

1. 教会員は本教会の主体として、定款に基づき各種の会議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
2. 18 歳以上の洗礼教会員で、洗礼教会員となった日から 1 年以上経過した者を正会員とする。正会員は、各種会議の議決権、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する。
3. 本教会の定款に基づいて懲罰を受けた者でも、正会員の資格を失わない。ただし、次項に定める出教処分を受けた者は、教会員の地位及び権利を喪失するため、正会員の資格を当然に失う。
4. 異端に陥るか、または悪行を繰り返した者で、堂会から勧告を受けてもこれらの行為をやめない者について、共同議会の議決により、教会への出入りを禁止し、かつ教会員の資格を喪失させることができる。(以下「出教処分」という。)
5. 教会員の義務を履行しない者について、堂会の議決により、1 年を超えない期間を定めて教会員の権利を停止または喪失させることができる。

1. 교인은 본 교회의 주체로서 본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교인 중 만 18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세례교인이 된 날짜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일지라도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다음 4 항의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 및 권리가 상실되며, 정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4.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악행을 반복하는 자로 당회의 권고를 받아도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며 교인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이하 출교처분이라고 한다).
5.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1 년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교인의 권리를 중지 또는 상실케 할 수 있다.

第 12 条 教会員の義務 (교인의 의무)

教会員は、共同礼拝への出席、献金、奉仕、交わり、救済、教育及び宣教に励み、教会の定めに従う義務を負う。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헌금, 봉사, 친교, 구제, 교육, 선교에 힘쓰며, 교회의 치리에 따르는 것이다.

第 13 条 教会員の資格喪失 (교인의 자격상실)

教会員は、次の事由によって教会員の資格を喪失する。

1. 教会員本人が移籍を要求する場合
2. 共同議会で出教の決議を受けた場合

3. 特別な事由なしに1年以上教会に出席していない場合

교인의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는 경우
2. 공동의회에서 출교의 결의를 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第4章 教会役員 (교회의 직분자)

第14条 区分 (구분)

教会役員は恒常職と臨時職に区分する。

교회의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第15条 恒常職 (항존직)

恒常職には牧師、長老、按手執事、勸師がある(使徒言行録20:17、28、テモテへの手紙一3:1~13)。恒常職の定年は70歳になる年の年末までとする。ただし、恒常職の役員は、定年の70歳になる前に引退を表明すれば堂会の許可を得て引退することができる。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행 20:17, 28, 딤후전 3:1-13), 시무 정년은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로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第16条 臨時職 (임시직)

臨時職には副牧師、伝道師、宣教幹事、署理執事がある。任期は1年とし、再任を妨げない。

임시직은 부목사, 전도사, 선교간사, 서리집사로,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第5章 牧師 (목사)

第1節 牧師 (목사)

第17条 定義 (정의)

牧師は、次のとおり定義する。

1. 牧師は、キリストの羊である教会員を賢く、巧みに導く牧者である(エレミヤ書3:15)。
2. 牧師は、教会員の模範になり、牧会する長老である(ペトロの手紙一5:1-3)。
3. 牧師は、キリストの僕であり、使者である(コリントの信徒への手紙二5:20)。

4. 牧師は、キリストの御言葉で教会員を教える教師である（テトスへの手紙 1:9）。
5. 牧師は、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る伝道者である（テモテへの手紙二 4:5）。
6. 牧師は、キリストの教えを守り、神の計画をゆだねられた管理人である（ルカによる福音書 12:42、コリントの信徒への手紙一 4:1-2）。

목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렘 3:15）.
2.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벧전 5:1-3）.
3. 목사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종과 사자이다（고후 5:20）.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다（딤후 1:9）.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다（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자이며、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고전 4:1-2）.

第 18 条 牧師の称号（목사의 칭호）

牧師の称号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担任牧師は、本教会を代表し、教会の職務と使役を担当する牧師である。
2. 副牧師は、担任牧師を補佐して行政、教育、賛美使役、相談などの働きの中、一つ以上の職務を担う臨時牧師である。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교회 직무와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교육、찬양사역、상담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이다.

第 2 節 担任牧師（담임목사）

第 19 条 担任牧師の職務（담임목사의 직무）

担任牧師は主なる神様の御言葉を宣言し教え、聖礼典を執り行つて教会員を祝福する。また長老と協力し、教会の行政と定めを遂行する。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수행한다.

第 20 条 担任牧師の招聘（담임목사의 청빙）

1. 担任牧師は堂会の推薦と共同議会の議決で招聘する。
2. 担任牧師の招聘は、正会員の過半数が出席した共同議会で、出席者の3分の2以上の賛成で決定する。
3. 堂会は、招聘牧師候補の推薦のために招聘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招聘委員会

の委員は、副牧師、長老、按手執事、勸師、署理執事の中から諸職会の議決によって選ばれる。

4. 招聘委員会で定めた評価基準表に基づいて、招聘委員会は候補者を複数選定し、堂会に推薦しなければならない。堂会は招聘委員会の推薦を承認する。

5. 招聘牧師の資格、処遇など招聘条件は、招聘委員会で定める。

1. 담임목사는 당회의 추천 및 공동의회의 의결로 청빙한다.
2. 담임목사의 청빙은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동의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당회는 청빙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직회는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중에서 청빙위원을 선출한다.
4. 청빙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당회가 이를 승인한다.
5. 청빙목사의 자격, 처우 등 청빙 조건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 21 条 担任牧師の任期 (담임목사의 임기)

1. 担任牧師の任期は、本教会の牧会開始日から6年とし、再信任により再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再信任は、堂会の発議にもとづいて、任期満了前1カ月以内に開催される正会員の過半数の出席した共同議会で、出席者の3分の2以上の賛成で決定する。

3. 再信任が否決された担任牧師には任期満了日から6ヶ月間、既存の基本給を支給する。

4. 再任が決定された担任牧師は、1年未満の有給休暇を持つ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期間は堂会で決定する。

1. 담임목사의 임기는 본 교회 목회 시무일로부터 6년으로 하되, 재신임으로 재임할 수 있다.
2. 재신임은 당회의 발의에 의해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공동의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재신임이 부결된 담임목사에게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6개월간 기존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4. 재임이 결정된 담임목사는 1년 미만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第 22 条 担任牧師の辞任 (담임목사의 사임)

担任牧師が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堂会に辞任の意を申し出た場合、堂会はその理由を充分に調べ、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辞職を認める。

담임목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본 교회 당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하면,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처리한다.

第 23 条 担任牧師の解任 (담임목사의 해임)

正會員の過半数が書面によって担任牧師の解任を請願する場合、担任牧師が任職誓約を侵した場合、担任牧師に大きな過ちがある場合またはその他の事情で職務が遂行できない場合、堂会は、これを審査し、牧師に辞任を勧告する。担任牧師が堂会の辞任勧告を拒否する場合、堂会は共同議會を招集し、共同議會の議決をもって担任牧師を解任する。この議決は、正會員の過半数が出席し、出席者の3分の2以上の賛成で決定する。

본 교회 정회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담임목사의 직무 사임을 청원하거나 담임목사가 임직서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본 교회 당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사임권고를 거부할 경우,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동의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

第 24 条 担任牧師の休職 (담임목사의 안식)

1. 職務遂行中の担任牧師は、次の事項に該当する理由により3か月以上休職を求める場合、堂会の許可を得て、休職することができる。

- (1) 海外留学
- (2) 研究機関あるいは教育機関における研修
- (3) 身体あるいは精神上的の休養と安息が必要とされるとき
- (4) その他前号に相当する理由があるとき

2. 休職期間は1年を超え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定められた休職期間を超えて休職をする必要が認められる場合、堂会は、1年を超えない範囲で休職期間の延長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

1. 직무중의 담임목사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이유로 3개월이상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본 교회 당회의 의결로 휴직할 수 있다.

- (1)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2)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 신체, 정신상의 휴양과 안식을 요할 때
-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회는 1년 기간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第 3 節 副牧師 (부목사)

第 25 条 副牧師の招聘、再任、解任 (부목사의 청빙, 재임, 해임)

副牧師の招聘、再任、解任は、堂会の決議および在籍會員の過半数が出席した諸職会で出

席者の過半数の賛成で決定する。副牧師招聘の場合、堂会は、招聘書、堂会議事録の写し、諸職会議事録の写し、副牧師の履歴書を老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부목사의 청빙, 재임, 해임은 당회의 결의 및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제직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목사 청빙의 경우, 당회는, 청빙서, 당회 회의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부목사의 이력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6 章 長老、按手執事、勸師 (장로, 안수집사, 권사)

第 26 条 長老の職務 (장로의 직무)

長老は教会員の中から選ばれ、担任牧師と協力して行政と勸告と懲戒の職務を担当する。また、長老は、教会の靈的な状況を見守り、教会員が教理を誤解したり道徳的に過ちを犯さないように教え、訓戒に従わない教会員がいる場合、これを堂会に報告する。

장로는 교회의 덕함을 받고,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당회에 보고한다.

第 27 条 長老の資格 (장로의 자격)

長老は、高い見識と指導力を持っており、教会と地域社会から信頼を受けており、健全な信仰を持っている洗礼教会員（入教教会員）で、7年以上の署理執事の経歴を持ち、40歳以上の教会員の中から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

장로의 자격은 높은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리집사 경력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의 교인이어야 한다.

第 28 条 長老の執務期間 (장로의 시무 연한)

1. 長老の執務期間は、定年の70歳までを限度とし、休職期間1年を含めて13年とする。
2. 長老は、執務開始日から6年を経過した日から1年間休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長老は、執務開始日から6年を経過した時点で、共同議会で再信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再信任を受けた長老は、休職期間が終了した日の翌日から6年間執務を行う。再信任を否決された長老は執務を解かれる。

1. 장로의 시무 연한은 정년 70세까지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정한다.
2. 장로는, 시무개시일부터 6년이 경과한 날짜부터 1년간 휴무해야한다.
3. 장로는, 시무개시일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의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재신임을 받은 장로는, 휴무기간이 종료하는 날짜의 익일부터 6년간 시무할 수 있다. 재신임이 부결된 장로는 시무할 수 없다.

第 29 条 按手執事の職務 (안수집사의 직무)

按手執事は教会員の中から選ばれ、諸職会の会員になって教会の運営と救済、奉仕および宣教に関わる職務を担当する。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 회원이 되며、교회 운영과 구제、봉사 및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第 30 条 按手執事の資格 (안수집사의 자격)

按手執事は教会員から信頼を受けており、健全な信仰を持つ、知恵と分別力のある洗礼教会員（入教教会員）で、署理執事経歴 5 年以上で、35 歳以上の男性として、テモテへの手紙一 3 章 8 ~ 10 節の御言葉に適う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리집사 경력 5 년을 경과하고 35 세 이상의 남성 교인으로서 디모데전서 3 章 8-10 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

第 31 条 按手執事の執務期間 (안수집사의 시무 연한)

1. 按手執事の執務期間は、定年の 70 歳までを限度とし、休職期間 1 年を含めて 13 年とする。

2. 按手執事は、執務開始日から 6 年を経過した日から 1 年間休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按手執事は、執務開始日から 6 年を経過した時点で、共同議会で再信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再信任を受けた按手執事は、休職期間が終了した日の翌日から 6 年間執務を行う。再信任を否決された按手執事は執務を解かれる。

1. 안수집사의 시무 연한은 정년 70 세까지 휴무기간 1 년을 포함하여 13 년으로 정한다.

2. 안수집사는、시무개시일부터 6 년이 경과한 날짜부터 1 년간 휴무해야한다.

3. 안수집사는、시무개시일부터 6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의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재신임을 받은 안수집사는、휴무기간이 종료하는 날짜의 익일부터 6 년간 시무할 수 있다. 재신임이 부결된 안수집사는 시무할 수 없다.

第 32 条 勸師の職務 (권사의 직무)

勸師は教会員の中から選ばれ、諸職会の会員になって教職者と共に教会員の家庭を訪問し、経済に苦しんでいる者と悲しんでいる者を慰めて教会の徳を建てるために努める。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 회원이 되며、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단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第 33 条 勸師の資格 (권사의 자격)

勸師は洗礼教会員（入教教会員）で、署理執事経歴 5 年以上で、40 歳以上の女性教会員として行いが福音に適っており、教会員の模範にな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권사의 자격은 세례교인(입교인) 으로 서리집사 경력 5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의 여성 교인으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第 34 条 勸師の執務機関 (권사의 시무 연한)

1. 勸師の執務期間は、定年の 70 歳までを限度とし、休職期間 1 年を含めて 13 年とする。
 2. 勸師は、執務開始日から 6 年を経過した日から 1 年間休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勸師は、執務開始日から 6 年を経過した時点で、共同議会で再信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再信任を受けた勸師は、休職期間が終了した日の翌日から 6 年間執務を行う。再信任を否決された勸師は執務を解かれる。
1. 권사의 시무 연한은 정년 70 세까지 휴무기간 1 년을 포함하여 13 년으로 정한다.
 2. 권사는, 시무개시일부터 6 년이 경과한 날짜부터 1 년간 휴무해야한다.
 3. 권사는, 시무개시일부터 6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의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재신임을 받은 권사는, 휴무기간이 종료하는 날짜의 익일부터 6 년간 시무할 수 있다. 재신임이 부결된 권사는 시무할 수 없다.

第 35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選任と任職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 및 임직)

1. 長老、按手執事、勸師は、堂会の推薦を受け、共同議会の議決により選出する。
 2. 長老、按手執事、勸師の任職は本人の承諾後に堂会が任職する。
 3. 長老は、選挙後の 5 カ月またはそれ以上の期間、担任牧師の指導の下、教養訓練を受けて老会の試験に合格しなければならない。按手執事、勸師は選挙後 3 カ月以上の期間、担任牧師の指導の下、教養訓練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2.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은 본인의 승낙후에 본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3. 장로는 선거후 5 개월 또는 그 이상 담임목사의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후 3 개월 이상 담임목사의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한다.

第 36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辞任・解任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

長老、按手執事、勸師の辞任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辞任：長老、按手執事、勸師は、職務遂行継続が困難な場合、辞任届を堂会に提出して、堂会の許可を受けて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解任：長老、按手執事、勸師が法律を違反する行為はしていなくても職務遂行継続が教会に徳をもたらさないと判断された場合または異端に陥ったり悪行^{あくぎょう}はしていなくても教会を惑わせて職務遂行継続が困難と判断された場合、堂会は、その者に対し、辞任を勧告またはその者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은 다음과 같다.

1. 사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사직서를 본 교회 당회에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다.
2. 해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거나 범법이 있을 경우 혹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시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회의 의결로 시무 사임을 권고, 해임시킬 수 있다.

第 37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辞任届処理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長老、按手執事、勸師が辞任届を提出した場合、堂会は、辞任届の提出があった日から3か月以内に辞任の許否をその者に知らせる。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본 교회 당회는 적법한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사임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第 38 条 長老、按手執事、勸師の休職及び復職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長老、按手執事、勸師が特別な事情により休職を願う場合、堂会は、休職を認める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休職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辞任(辞任勧告を受けて辞任した場合を除く。)した長老、按手執事、勸師が復職を願う場合、共同議会の議決により復職することができる。

1.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의결로 휴무할 수 있다.
2. 사임(사임권고를 받아 사임한 경우는 제외)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공동의회의 의결로 복직할 수 있다.

第 7 章 伝道師、宣教幹事、署理執事、事務職員

(전도사, 선교간사, 서리집사, 사무직원)

第 39 条 伝道師、宣教幹事の任命 (전도사, 선교간사의 임명)

1. 伝道師、宣教幹事は、堂会長の推薦により堂会が選任する。再任は、堂会の議決による。
2. 任命する伝道師、宣教幹事の数と処遇条件などは堂会で定める。
 1. 전도사, 선교간사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시무의 계속 여부는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2. 임명할 전도사, 선교간사의 수와 처우 등은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第 40 条 署理執事の職務、任命および辞任 (서리집사의 직무 및 임명)

1. 署理執事は、教会運営、救済、奉仕及び宣教のために活動する。
2. 署理執事は 30 歳以上の洗礼教会員(入教教会員)で、担任牧師、または人事委員会の在籍委員の 3 分の 2 以上の賛成をもって推薦された者の中から、毎年堂会が任命する。

3. 署理執事は本人が辞任届を提出した場合、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
4. 署理執事は、堂会の議決により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1. 서리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봉사 및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2. 서리집사는 30 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는 담임목사, 또는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회가 임명한다.
 3. 서리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다.
 4. 본 교회 당회의 의결로 서리집사를 해임할 수 있다.

第 41 条 職員 (직원)

1. 本教会の運営は、すべてのことを教会員たちの奉仕によって実行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必要な場合には、次の職員を採用して有給制で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
 - (1) 事務職員：経理、事務を担当する職員で、職務内容及び待遇等は堂会で定める。
 - (2) 臨時職員：必要に応じて一時的に採用する職員。職務内容及び待遇等は堂会で定める。
2. 職員 (YICS 職員を除く。) は教会員でなければならない。職員は、教会員の地位を失った場合、自動的に退職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
3. 職員は、人事委員会の推薦で堂会の在籍委員の過半数の賛成によって採用し、堂会の管理下で職務を遂行する。
4. YICS 職員の採用は YICS 定款に従う。
 1.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할 수 있다.
 - (1) 사무직원: 경리,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직무내용 및 예우 등은 당회에서 정한다.
 - (2) 임시직원: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직원이며, 직무내용 및 예우 등은 당회에서 정한다.
 2. 직원은 교인이어야하며 (YICS 직원은 제외),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
 3.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용하며, 당회의 관리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4. YICS 직원의 채용은 별도 YICS 의 정관을 따른다.

第 8 章 議決機關 (의결기구)

第 42 条 議決機關の区分 (의결기구의 구분)

- 本教会の議決機關は、共同議會、堂会、諸職会に区分する。
 본 교회의 의결기구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로 구분한다.

第9章 共同議會 (공동의회)

第43条 性格 (성격)

本教会は、最高議決機関として共同議會を置き、教会運営に関する重要事項の決定および承認に関する事項を議決する。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두며,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第44条 構成 (구성)

本教会の共同議會は、次のように構成する。

1. 本教会の共同議會の正会員は、定款第11条で定義された18歳以上の洗礼教会員であつて、洗礼教会員となつた日から1年を経過した者をいう。ただし、出教処分を受けた者及び堂会の議決により権利を制限された者を除く。
2. 共同議會の議長は、担任牧師が務める。共同議會の書記は堂会の書記が兼務する。
3. 共同議會の議長が病気やその他の事情により職務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堂会の議決で堂会の中から臨時議長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본 교회의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교회 공동의회 정회원은, 본 교회 정관 제11조에서 정의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며, 세례교인이 된 날짜로부터 1년을 경과한 교인이어야 한다. 단, 제명 또는 출교처분을 받은 자 및 당회의 의결로 권리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한다.
2.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3. 공동의회 의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시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당회에서 임시의장을 정할 수 있다.

第45条 招集 (소집)

1. 本教会の共同議會は、次の場合に、堂会の決議で堂会長が招集する。

- (1) 堂会が必要と認めて招集を決議したとき
- (2) 諸職会の請願で堂会が決議したとき
- (3) 正会員の5分の1以上が招集を要求したとき

2. 堂会は、共同議會を開催する日付、場所と議案を1週間前に教会の掲示板、週報、あるいは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公示する。ただし、特に緊急を要するときは、1週間以内であっても、電子メール、SNSなどで通知することにより、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緊急を要するときの判断は、堂会の決定による。

1. 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 (3) 본 교회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인원이 소집을 요청한 때
2.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전에 본 교회 게시판, 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1주간 이내이더라도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유효하게 소집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때의 판단은 당회의 결정에 의한다.

第 46 条 會議 (회의)

1. 本教会の共同議会の會議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定例会議：定例会議は3月に行う。定例会議では、堂会、諸職会、各委員会、各部署が活動報告をし、当年度の教会の決算の見込みを報告するとともに、次年度の予算案を承認し、その他定款によって適法な手続きを経て公告された案件のみを扱う。定例会議は堂会の決議で招集する。

(2) 臨時會議：共同議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案件がある場合、堂会がその案件を明示して1週間前までに発表して招集し、提出された案件のみを処理する。

2. 特別な理由により上記定例会議を招集できない場合、予算は前年度予算に準ずる。

1.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3월에 개최한다. 정기회의에서는, 당회, 제직회, 각종 위원회, 각종 부서가 활동보고를 하며, 당해년도 교회 결산을 보고하고, 차기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정기회의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1주전까지 공고하고 소집하여,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2. 특별한 이유로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第 47 条 職務 (직무)

1. 本教会の共同議会在處理する案件の議決事項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当年度決算案と次年度予算案の確定
- (2) 監査報告書の承認
- (3) 教会定款の制定および改正
- (4) 担任牧師の招聘、再信任、辞任、解任に関する投票
- (5) 堂会が共同議会の議決事項として提示した案件
- (6) 長老、按手執事、勸師の選出、再信任、復職に関する投票
- (7) 監事の選出
- (8) 本教会の堂会で定められた重要な不動産の処分に関する事項および投票
- (9) 教会員の出教処分

1. 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당해년도 결산안과 차기년도 예산안의 확정
- (2) 감사보고서의 승인
-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 (4) 담임목사의 청빙, 재신임, 사임 및 해임에 관한 투표
- (5)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 (6)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및 시무권사의 선출, 재신임, 복직에 관한 투표
- (7) 감사의 선출
- (8) 본 교회 당회에서 결정한 중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및 투표
- (9) 교인의 출교 처분

第 48 条 定足数 (정족수)

1. 本教会の共同議会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ない限り、定められた時間に出席する正会員で開会し、出席者の過半数の賛成で議決する。出席していない正会員は、議決に異議を申し立てないものとする。

2. 委任状の提出は議事定足数に含まないことにする。

1. 본 교회 공동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하는 정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하지 않는 정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본 교회 정회원이 본 교회 공동의회에 참석이 불가하여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第 49 条 定足数の特則 (정족수의 특별 규칙)

1. 次の議案を議決する場合、共同議会は、正会員の過半数の出席で開会し、出席者の3分の2以上の賛成で議決する。

- (1) 担任牧師の招聘、解任
- (2) 長老の選挙
- (3) 監事の選出
- (4) 定款改正
- (5) 決算及び予算の承認

2. 次の議案を議決する場合、共同議会は、正会員の過半数の出席で開会し、出席者の過半数の賛成で議決する。

- (1) 長老の再信任、復職
- (2) 按手執事及び勸師の選挙、再信任及び復職
- (3) 監事の再信任
- (4) 第 71 条 2 項の基準金額の承認
- (5) 第 71 条 3 項の議案

1. 다음의 의안을 의결하는 경우, 공동의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담임목사의 청빙, 해임
- (2) 장로의 선거
- (3) 감사의 선출
- (4) 정관 개정
- (5) 결산 및 예산의 승인

2. 다음의 의안을 의결하는 경우, 공동의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장로의 재신임, 복직
- (2)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거, 재신임 및 복직
- (3) 감사의 재신임
- (4) 제 71 조 2 항의 기준금액의 승인
- (5) 제 71 조 3 항의 의안

第 50 条 教会員名簿 (교인명부 작성)

1. 本教会の堂会は、共同議会の定例会議の開催のための正会員名簿を開催日の4週間前を基準として作成し、開催前に供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臨時会議では直前の定例会議で作成した名簿を準用する。

2. 正会員名簿の閲覧請求があったとき、堂会は、閲覧請求者に関して登録された情報のみ閲覧に供する。

3. 何人も、自分が正会員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目的以外の目的で正会員名簿を閲覧することはできない。

1. 본 교회 당회는, 공동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원 명부를 개최일 4 주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개최전에 공람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에서는 직전 정기회의에서 작성한 명부를 준용한다.

2. 교인명부의 열람청구가 있을 경우, 당회는 열람청구자와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만 열람을 허용한다.

3. 어떤 사람에게도, 본인의 교인명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교인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第 10 章 堂会 (당회)

第 51 条 定義 (정의)

堂会は教会運営に関わる事項全般について議論する合議体の議決組織である。

본 교회 당회는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합의체 의결기구이다.

第 52 条 構成 (구성)

1. 堂会は担任牧師、長老を以って組織する。
2. 堂会長は担任牧師が務める。書記は堂会の議決を以って決める。
 1. 본 교회 당회는 담임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2. 본 교회 당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第 53 条 職務 (직무)

堂会が取り扱う案件と議決事項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臨時職の役員の任命など、諸事項を取り扱う。
- (2) 堂会長が任命する諸職会、委員会及び各部署の人事事項を議決する。
- (3) 財政委員会、招聘委員会、人事委員会などを組織し、運営する。
- (4) 献金の種類、時期及び方針を作成する。
- (5) 教会内の組織体系を整備し、主要教役を調整する。
- (6) 共同議会の招集を議決する。
- (7) 財産の取得、処分、贈与、売買、変更、管理及び借入、担保提供などについて議決する。ただし、本教会の定款に定められている重要不動産の処分については共同議会に提出し、議決する。
- (8) 予算、決算及び財務会計管理に関する特別事項を定める。
- (9) 教会員が義務を履行しない場合その権利を制限する。
- (10) 本定款及び共同議会により委任された事項を取り扱う。

본 교회의 당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시직 직분자의 임명, 해임, 사임권고 등의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2)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 위원회 및 부서의 인사를 결의한다.
 - (3) 재정위원회, 청빙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필요시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 (4) 교회 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성한다.
 - (5) 교회의 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 (6) 공동의회의 소집을 결의한다.
 - (7)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 제공 등을 결의한다.
- 단, 본 교회 정관에서 규정한 중요 부동산의 처분은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8)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 (9)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 (10)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第 54 条 招集 (소집)

堂会は毎月定まった日時に開催される。次の場合は臨時会を開催する。

1. 堂會會長、あるいは堂會委員の3分の1以上が招集を要請する場合。
2. 監事から招集要請がある場合。

본 교회 당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회로 개최된다.

1. 당회장 또는 당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2.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第 11 章 執行組織 (집행기구)

第 55 条 執行組織の区分 (집행기구의 구분)

本教會の執行組織は諸職會、人事委員會、及びその他必要組織に区分する。

본 교회의 집행기구는 제직회, 인사위원회 및 기타 필요기관으로 구분한다.

第 12 章 諸職會 (제직회)

第 56 条 機能 (제직회의 기능)

本教會の財政を執行する組織として諸職會を置く。諸職會に東京、早稲田、Chinese の各諸職會を置く。

본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제직회에는 한국어부/일본어부/중국어부 각 제직회를 둔다.

第 57 条 構成 (제직회의 구성)

1. 本教會の諸職會は、担任牧師、副牧師、伝道師、宣教幹事、長老、按手執事、勸師、署理執事によって構成される。ただし、堂會の議決を以って長老、按手執事、勸師、署理執事ではない正會員に會員權を与えることができ、その正會員は議案や案件を提案することができる。

2. 諸職會の議長は担任牧師が務め、書記と會計を選任する。

3. 諸職會は円滑な実務執行のため、その下に委員會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必要に応じて傘下の部署と機關を置くことができる。

1. 본 교회 제직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선교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당회의 의결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아닌 정회원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의안이나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직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3. 제직회에는 원활한 실무 사역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하부서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第 58 条 招集 (제직회의 소집)

諸職会の議長は毎月 1 回、東京・早稲田・Chinese 各々の定期諸職会を招集し、東京・早稲田・Chinese の合同諸職会は 2 ヶ月に 1 回招集する。必要に応じて、堂会長または堂会の決議を以って臨時諸職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제직회 의장은 매월 최소 1 회、한국어부/일본어부/중국어부의 제직회를 각각 소집하며、한국어부/일본어부/중국어부 합동제직회는 2 개월에 1 회 소집할 수 있다. 필요시 당회장 혹은 당회의 의결로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第 59 条 職務 (제직회의 직무)

本教会諸職会の職務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共同議会にて議決された予算の執行を管理する。
2. 宣教及び救済、その他財政に関する実務を取り扱う。
3. 副牧師の招聘、再任、解任に関する事項を議決する。
4. 担任牧師の招聘委員を選出する。
5. その他堂会が委任する財政に係る特別案件を協議する。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집행을 관리한다.
2.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부목사의 청빙, 재임,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담임목사의 청빙위원을 선출한다.
5.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 안건을 협의한다.

第 60 条 部署 (부서)

1. 本教会の行政業務と円滑な執行のため、運営につき自律性が保障される基本組織として次のとおり各部署を置く。

- (1) 礼拝部：礼拝と聖礼典に関わる業務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2) インターネット宣教部：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国内外の宣教支援及び関連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3) 放送部：放送の音響、映像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4) 教育訓練部：教会員教育及び訓練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5) 管理部：教会内外の建物、物品などの保存、購入、維持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6) 記録部：教会の行事、集会の記録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 (7) 財政部：各部署に対する財政支援と調整及び教会の財政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8) 施設部：教会建物と施設の補修管理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9) 運送部：人員と物品の運送、車両の管理など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10) 儀典部：教会来客の送迎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11) 賛美礼拝部：聖歌隊、礼拝賛美などに関わ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12) 慶弔部：教会員の慶弔行事を支援す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13) 日曜学校（幼稚部、幼年部、小学部、中高等部）：18歳未満の幼・少年を聖書で教育する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14) YIGS（ヨハン国際クリスチャン学校）：国際性の卓越するクリスチャン・リーダーを養成する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運営業務についての計画策定及び執行の主管部署。

2. 各部署は、通常業務と堂会から承認を得た業務執行に対して自律性を持って実行する。ただし、次の各項に該当する場合は堂会から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承認が得られない場合、堂会はその理由を書面によってその部署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1) 各部署が新しい活動を実行しようとする場合。

(2) 部署の円滑な活動を実行するため、部署間の業務内容の調整。

3. 堂会は必要に応じて部署を新設、統合、廃止することができる。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본 단위로써 다음과 같이 제직회 내에 각 부서를 둔다.

(1) 예배부: 예배와 성례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2) 인터넷선교부: 국내외 인터넷 관련 선교의 지원 및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3) 방송부: 방송 관련 음향, 영상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4) 교육훈련부: 교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5) 관리부: 교회 내외의 건물, 물품 등을 보존, 구입, 유지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6) 홍보기록부: 교회 행사, 집회상황 기록에 관한 업무와 문서 선교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7) 재정부: 여타 부서에 대한 재정 지원과 조정 및 교회 재정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8) 시설부: 교회의 건물,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9) 수송부: 인원과 물품 수송, 교회 차량 관리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10) 의전부: 교회 방문 손님의 마중과 영접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11) 찬양경배부: 성가대, 예배찬양 등에 관한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12) 경조부: 교인의 경조행사를 지원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13) 주일학교(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만 18세 미만의 유/소년을

성경말씀으로 교육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14) YICS(요한국제기독교학교): 차세대의 월드 크리스찬 리더를 양육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업무의 계획 수립과 집행

2. 각 부서는, 통상적인 업무 및 당회로부터 승인받은 활동의 집행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부서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활동

(2) 부서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부서간 업무내용의 조정

3. 본 교회 당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第 13 章 人事委員会 (인사위원회)

第 61 条 人事委員会 (인사위원회)

1. 堂会は、必要に応じて、教会内に人事委員会を組織し、次の事項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1) 共同議會へ上程する長老、按手執事、勸師及び監事候補者の選定、勸告及び懲戒

(2) 署理執事及び各部署長の候補者の選定、勸告及び懲戒

2. 前項 1 号に定める候補者の選定を目的に組織された人事委員会は、長老、按手執事、
勸師、監事の候補者名簿を審議し確定して、共同議會に上程する。上程を受けた共同議會
が閉会した後、人事委員会は解散する。

3. 人事委員会は、副牧師、伝道師、宣教幹事から選出された教職者会代表、長老会代表、
按手執事・勸師・署理執事から選出された執事会代表によって構成し、各代表の人数は堂
会の議決によって定める。ただし、各代表は、教職者会、長老会、執事会が独自で選出す
る。

4. 人事委員会の委員長は人事委員会から委員多数決によって選出し、書記は委員長が委
員の中から選任する。

1. 당회는 필요시 교회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공동의회에 상정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감사 후보자 선정 및 권징

(2) 서리집사 및 각 부서장 후보자의 선정 및 권징

2. 전항 1 호에서 정하는 후보자의 선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인사위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감사의 후보자 명단을

심의, 확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당해 공동의회의 폐회후, 인사위원회는
해산한다.

3. 인사위원회는, 부목사, 전도사, 선교간사 중에서 사역자 대표, 장로회

대표, 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중에서 집사 대표로 구성하며, 각 대표의 수는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각 구성 대표의 선출은 사역자회, 장로회, 집사회에서 자체 의결로 결정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수결로 선출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第 14 章 その他の必要組織 (기타 필요 기관)

第 62 条 その他の組織の設立 (기타 기관의 설립)

1. 堂会は教会の行政業務を円滑に遂行するため必要に応じて新たに組織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基づいて設けられた組織は、定款、活動計画等を堂会に提出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組織は、自律的に活動し、活動成果と財政等について年 1 回以上監査を受けることを原則とする。

1. 본 교회 당회는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정관 및 활동계획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활동성과와 재정등에 관하여 연 1 회 이상 감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 63 条 自治組織 (자치기관)

本教会は、教職者会、長老会、勸師会、執事会などの職能別自治組織を東京、早稲田、Chinese に各々設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年齢別自治組織と奉仕、宣教、教育活動などを目的とする任意組織を、堂会の議決により設けることができる。

본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등의 직능별 자치기관을 한국어부, 일본어부, 중국어부에 각각 둘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자치기관과 봉사, 선교,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 기관을 당회의 의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第 15 章 監事 (감사)

第 64 条 機能 (기능)

本教会の運営を監査するために監事を置く。

본 교회의 운영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第 65 条 選出、任期、構成 (선출, 임기 및 구성)

1. 監事は堂会の推薦を以って共同議会にて選出する。

2. 監事の任期は1年とし、1回に限り再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監事は監査業務実行を円滑かつ迅速に行うために必要人数の監査委員を堂会に推薦することができる。監査委員の任命は堂会の議決を以って行われる。
 1. 감사는 본 교회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원활하고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수로 구성된 감사위원을 당회에 추천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당회의 의결로 임명된다.

第 66 条 監査活動 (감사 활동)

1. 監事は、本教会の運営および計算書類を監査し、共同議会に年1回結果報告を行う。ただし、必要時は臨時に監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監査を開始する場合、監事は監査日程を定めて予め堂会長に通知する。
3. 監事は堂会の発言権を有する。
 1. 감사는, 본 교회의 운영과 회계서류를 감사하여,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단, 필요시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가 감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일정을 당회장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3. 감사는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 16 章 會議及び投票 (회의 및 투표)

第 67 条 會議の成立 (회의의 성립)

本定款が特に成立要件を規定した場合を除き、すべての會議は在籍會員の過半数の出席を以って成立する。

본 정관에서 특별히 성립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第 68 条 議決定足数 (의결정족수)

本教会の會議は、本定款が特に規定した場合を除き、出席者の過半数の賛成を以って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

본 교회의 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69 条 投票方法 (투표 방법)

投票方法は原則として無記名、秘密投票とする。ただし、任職者の選出や再信任の投票以外は挙手による投票ができる。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직분자의 선출 및 재신임을 위한

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

第 17 章 財産及び財政 (재산 및 재정)

第 70 条 財産権 (재산권)

本教会の財産とは、教会員の十分の一献金など各種献金やその他の収入によって形成された動産及び不動産を言う。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第 71 条 財産の管理 (재산의 관리)

1. 教会の財産は教会員全員の所有であるため個人がいかなる場合もそ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はできない。教会員の資格を喪失した場合は、教会の財産に対する所有も放棄したものとみなす。
2. 教会財産の取得、売渡、贈与、交換、用途変更などに関わる諸事項は堂会の議決に従う。ただし、上記行為の対象となる財産の取得金額、処分金額または評価金額が基準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共同議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金額については、共同議会の定例会議に堂会が提案し、承認を得る。
3. 次の重要不動産の売渡、贈与、交換、担保提供などの処分行為については共同議会の議決を以て決定する。

(1) 本教会の建物

(2) 本教会の牧師館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상기 행위의 대상 재산의 취득 금액, 처분 금액 또는 평가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당회는 기준 금액을 공동의회의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는다.
3. 다음의 중요 부동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처분 행위는 공동의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본 교회의 건물
 - (2) 본 교회의 목사관

第 72 条 財政原則 (재정원칙)

本教会の財政原則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財政運営は透明でなければならない。決算は内部監査を原則とする。
2. 本教会の財政運営の健全性を確保するために内部監査を年1回実施する。必要な場合、堂会の議決によって外部の会計組織に会計監査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의 운용은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1회 시행한다. 필요시에, 당회의 결의로 교회외부의 회계기관에 회계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第 73 条 財政帳簿の閲覽 (재정장부 열람)

本教会は、正会員であって本教会の事務所に備えられた財政帳簿を閲覽する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り、かつ、その閲覽の請求が不当な目的によるものでないと認められる者から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閲覽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본 교회는, 정회원으로 본 교회의 사무실에 비치된 재정장부를 열람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열람 요청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第 74 条 予算及び決算 (예산 및 결산)

1. 本教会の定款が定める各部署、委員会の長は、会計年度開始の30日前までに翌年の支出予算を編成し、東京、早稲田またはChineseの財政部へ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収入予算は、任意的な収入目標設定を避けるため、作成しないことができる。支出予算は、各部署や委員会が作成した支出予算を財政部が統合、調整した後、堂会の審議を経て共同議会にて確定する。
3. 決算は、東京、早稲田、Chineseの各財政部が作成し、堂会が審議し、その内容を監査報告書と共に共同議会に回付して確定する。

1. 본 교회 정관에서 정한 부서 또는 위원회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년도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어부, 일본어부, 중국어부의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예산은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출예산은 각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출예산을 재정부에서 통합, 조정한 후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한국어부, 일본어부, 중국어부의 각 재정부가 작성하여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第 75 条 予備費 (예비비)

当該年度予算を超過した場合、または予算外の事案に対する支出が生じた場合に備え、予算内に予備費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예산 초과 또는 예산 이외의 사안에 대한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내에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第 76 条 献金の管理 (헌금 관리)

教会員のすべての献金内訳は財政部の計数担当が合同計数し、記録、保管する。その内訳は監査期間中に監事の要請による監事への公開以外において外部への公開は禁じられる。교인의 모든 헌금내역은 재정부의 계수담당자가 합동계수한 후 기록하여 보관하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第 77 条 財政支出 (재정 지출)

1. 共同議会にて確定された予算の支出には支出根拠が必要とされる。各部署や委員会の予算案に含まれていない財政支出は、共同議会にて議決された全予備費の範囲内で堂会の議決を以って転用し、執行する。

2. 各部署及び委員会は、予算の確保、執行、決算に対し責任を負う。

3. 財政支出に関わる要請や承認は書面によ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 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2. 각 부서 및 위원회는 부서장 및 위원장의 책임하에 예산의 확보, 집행 및 결산을 실시한다.

3. 재정지출과 관련된 요청 및 승인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第 78 条 支出証拠 (지출 증빙)

1. 本教会の財政支出には、領収証、またはこれに準じる証憑書類の添付が義務づけられる。証憑書類を添付できない場合は、出金伝票によって代替するか、支出をした部署ないし委員会が別途記録し、纏める。

2. 各部署及び委員会は、支出報告書に証憑書類を添付して、東京、早稲田、Chinese の各財政部に提出する。

1.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증으로 갈음하거나, 지급처를 담당 부서 및 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부서 및 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어부, 일본어부, 중국어부의 각 재정부에 제출한다.

第 79 条 会計年度 (회계연도)

本教会の会計年度は、毎年 4 月 1 日から 3 月 31 日までとする。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第 18 章 勸告と懲戒 (권고와 징계)

第 80 条 勸懲 (권징)

勸告と懲戒は、本教会の海外韓人長老会憲法に準じて、堂会が定める。

권징은, 본 교회의 해외한인장로회헌법(2009 년 2 월 3 일 제정) 에 준하여, 당회가 정한다.

付則 (부칙)

第 1 条

1. 堂会が組織されるまでの間、諸職会が推薦し共同議会で選出される運営委員会が堂会の職務を代行する。本定款の規定の適用にあつては、「堂会」を「運営委員会」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運営委員会の委員は、定められた時間に出席する正会員で開会する共同議会で出席者の過半数の賛成をもって選出する。

1.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직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운영위원회가 당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 정관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당회를 운영위원회로 대독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성된 시간에 출석하는 정회원으로 개최하는 공동의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第 2 条

1. 本定款は、共同議会の承認、その後の共同議会議長の公布を以って効力発生する。

2. 本定款に記載されていない細部事項は、堂会、または諸職会が細則として別途定めることができる。

1.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승인에 따른 공동의회 의장의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회 혹은 제직회가 세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第 3 条

1. 本定款の施行前に任職した副牧師、伝道師、宣教幹事、署理執事、部署長は、本定款

の施行された年の翌年の3月31日まで職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本定款の施行前に任職した副牧師、伝道師、宣教幹事、署理執事のうち定年を超えた者があっても、前項に規定される日まで解職されない。

1. 본 정관의 시행전에 임직한 부목사, 전도사, 선교간사, 서리집사, 부서장은, 본 정관이 시행되는 해의 익년 3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 정관의 시행전에 임직한 부목사, 전도사, 선교간사, 서리집사에서 정년을 넘긴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항에 규정된 날짜까지 해직되지 않는다.

第4条

本定款は施行された日から1年を経過した時点で、堂会はその施行状況を検討し、必要な範囲で改正案を作成し、共同議会上に上程しなければならない。

본 정관이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당회는 정관의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